



제433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6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2
2.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 삭제	9
※ 참고자료	12
1.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희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0.
3. 회부연월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¹⁾ 수립 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의2호 신설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소음대책사업”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u>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차 기본계획: 국방부고시 제2020-42호(2020년 12월)

제2차 기본계획: 국방부고시 제2026-6호(2026년 1월)

현행	개정안
<u><신 설></u> 6. (생략)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5의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 나.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 다.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 6. (현행과 같음)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소음대책사업 3의3. 주민지원사업

현행	개정안
4. 5. (생략) ③ · ④ (생략) <신설>	4.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이 지원사업계획을 수

현행	개정안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u>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u> <u>⑥ 국방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u> <u>⑦ 제6항에 따른 사업비 보조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조(소음피해 <u>보상금 등</u> 재원 마련 의무) ----- ----- -----지급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 민간 공항의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의 경우 토지매수청구권,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민간 공항 및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체계]

구 분	민간 공항			군용비행장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LdendB(A) ²⁾		보 상	웨 클 ³⁾	보 상(1인당)
1종	79이상		토지매수청구 및 손실보상	95이상	월 6만원
2종	75~79			90~95	월 4.5만원
3종	가	70~75	소음대책사업 ⁴⁾ 주민지원사업 ⁵⁾	80/85~90	월 3만원
	나	66~70			
	다	61~66			

□ 민간 공항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피해 보상체계가 다르게 규정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은 민간 공항 소음피해에 적용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 2) Lden(엘·디이엔, day evening night):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
 3)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
 4)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등이 있음
 5)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도서관과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음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비교표]

법률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상 시설	민간 공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사업 실시 주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사업 종류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주민복지사업 (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주민복지사업 (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3	학교·주민 주거용 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노유자시설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학교·주민 주거용 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노유자시설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보상금 외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1조 5,093억원의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⁶⁾

□ 국방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은 민간공항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므로 입법목적이 「군소음

6) 소음대책사업 연평균 1조 1,905억원과 주민지원사업 연평균 3,188억원을 합한 값임(2027년부터 2031년까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가정) (참고자료 1 참조)

보상법」과 다르고⁷⁾, 현행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음 피해 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므로 정부 예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2.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 삭제

- 개정안은 전입 시기에 따라서 소음피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 -----지급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7) 「공항소음방지법」은 영리 목적의 상업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재원은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사업비로 부담하며, 「군소음보상법」은 공익 목적의 군용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보상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⁸⁾, 2010년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사건 등 소음 피해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⁹⁾ 전입 시기별 감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전입 시기별 감액 기준]

법령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전입 시기	1989.1.1. ~ 2010.12.31.	2011.1.1. ~
보상금 감액 기준	30% 감액	50% 감액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주변으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임.

- 개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감액 규정의 제정 배경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8) 1951년 미국 공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만들어진 매향리 사격장은 1년 250일, 하루 600회에서 700회의 사격 훈련이 진행되어 소음 피해는 물론 오발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여 1988년 6월 ‘매향리 미 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짐. 2005년 9월에 매향리 사격장은 폐쇄되었음

9)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확정되어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었음

것으로 봄.

- 국방부는 보상금 공제나 감액 규정의 경우 현행법 시행 전 소음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단위: 억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소음대책사업	10,658	11,244	11,867	12,528	13,230
주민지원사업	2,854	3,011	3,178	3,355	3,543
합 계	13,512	14,255	15,045	15,883	16,7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구성